

의안번호	2203759
의 퇴 인	박홍배의원
회 답 일	2024. 10. 16.
추 계 번 호	24B3625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400만원, 2030년 2억 2,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0억 6,200만원(연평균 2억 1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재생원료의 사용의무 (안 제33조의3 신설) -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관리 및 목표설정 연구	204	208	212	216	221	1,062	212

주: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3조의3 신설(재생원료의 사용의무)	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·용기의 제조자등(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·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함)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그 제품·용기에 사용하여야 함(제1항)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재생원료의 범위, 의무사용 비율, 사용실적 신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(제2항) ※ 재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 도입에 따라 정책 이행실적 점검, 조사 및 사후관리, 목표설정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3조의3 신설(재생원료의 사용의무)	○	• 환경부 제출자료 참고 -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관리(의무율 준수 여부 조사) 및 목표설정(의무대상 확대, 의무율 상향) 연구 비용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⁾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2025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재생원료의 사용의무(안 제33조의3 신설)

- 현행법 제33조의2²⁾는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·용기의 제조자등에게 그 사용비율을 제품·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4.10. 기준, 단위: %)							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	2.5	2.1	2.0	2.0	2.0	2.0	2.0

2) 법 제33조의2(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)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·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·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.

법 시행규칙 제23조의4(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) ① 법 제33조의2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

로 규정

※ [참고자료] 현행법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 관리 현황 참고

[그림 1]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표시 도안
 < “가” 형 > < “나” 형 >



자료: 환경부고시 제2024-65호, 「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」, 시행 2024. 4. 11. [별표 1]

-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·용기의 제조자등³⁾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그 제품·용기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 -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승인 업무,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관리 및 목표설정 연구 등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 도입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8억원을 신규로 편성함⁴⁾
 - 이 중 의무사용 대상 관리 및 목표설정 연구 비용(2억원)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
 - (의무사용 대상 제조자등 관리) 의무사용율 준수 여부 조사 등
 - (목표설정)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확대, 의무사용률 상향 등

<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(제23조의3제1항 관련)>

사용되는 재생원료	적용대상	사용비율
1. 제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재생원료	가.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병	10퍼센트
	나.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·전자제품	20퍼센트
	다. 그 밖의 제품·용기	10퍼센트
2. 제1호 외의 재생원료	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·용기	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

3)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·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

4) 환경부는 PET 최종제품생산자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임

[표 2] 2025년도 예산안: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 도입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주요내용	2025(안)
자원순환촉진지원(1431-303)		
• 순환원료 사용촉진	천연자원에 대비되는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관리체계 구축('25~)	800
－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승인 업무	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승인 등 운영비	200
－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관리 및 목표설정 연구	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관리 운영비 및 목표설정 연구 용역비	200
－ 순환원료 생산·판매 실태조사 및 DB 구축	국내 순환원료 생산·판매 현황 조사(시장규모, 거래량, 품질, 단가 등)	400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

□ 따라서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 ‘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관리 및 목표설정 연구 비용’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-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관리 및 목표설정 연구 비용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으로 매년 2억원으로 가정
 - － 이때, 의무사용 관리대상 제조자등의 증가에 따라 관리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,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□ 추계결과,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관리 및 목표설정 연구 등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0억 6,2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관리 및 목표설정 연구	204	208	212	216	221	1,062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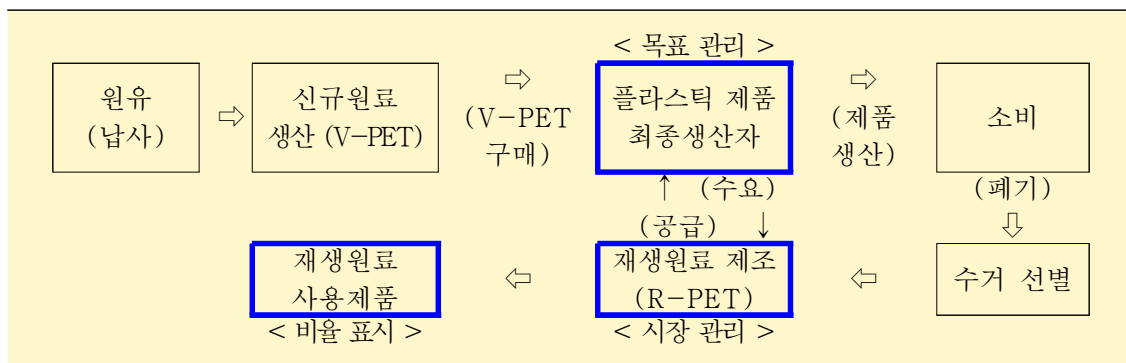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

[참고자료] 현행법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 관리 현황

(환경부 제출자료)

□ 추진 배경

- 국제 기준에 맞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관리를 위해 순환구조의 Value Chain 구축 필요



□ 법적 근거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(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)

※ 국정과제 제89번(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),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(PET 1만톤/년 이상 생산자)하고 관련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, 국제표준 기반의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 마련('23~)

□ 관리 체계

- ① **(의무사용)**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전환 및 '30년까지 30% 수준의 목표를 단계적 상향을 위한 정책지원
 - 재생원료 의무사용대상자 확대, 재생원료 의무사용 이행실적 검증 및 조사·관리, 중장기 재생원료 사용목표 연구
- ② **(사용표시)** 재생원료 비율표시 적정성 검토 및 대상업체 정기·수시 조사, 국제 재생원료 사용비율 인증 연계 수출 지원
- ③ **(시장관리)** 재생원료 공급자-수요자 간 공급망 구축, 관련 협의체 구성·운영

□ 사용비율 표시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23조의4(재생원료 비율표시 등)

사용되는 재생원료	적용대상	사용비율
1. 제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재생원료	가.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병	10퍼센트
	나.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·전자제품	20퍼센트
	다. 그 밖의 제품·용기	10퍼센트
2. 제1호 외의 재생원료	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·용기	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

□ 향후 계획

- PET 최종제품생산자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 부여 법령 개정(現 PET 1만톤 이상 원료생산자 3%)
- 의무대상자의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준수 여부 확인
- 의무사용 재질 및 품목 확대를 위한 목표 설정 연구 용역 지속